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옥인동 작약 2020〉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30
- 18 • 가정폭력상담실
- 22 • 어떻게 할까요
- 28 • 결혼과 인생(213) 만화일기
사람담게 _ 장차현실
- 29 • 새로 들어온 책
- 30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4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지역사회 법률구조 사업의 새 문을 열어 한 차원 높은 연대와 협력의 길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10월 23일 상담소에서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소 전 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업무협력기관 모임이 그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과는 달리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엄수하는 등 방역수칙에 각별히 유의하며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이 모임을 가진 후 돌아해보니 지난 해 연말부터 올해에도 몇 차례 이 지면을 빌어 상담소와 상담소 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럼에도 또 이 지면을 빌어 상담소의 전 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담소 지부들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40여년에 이르는 각각의 역사를 통해 상담소 65년 역사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상담소 전 지부들이 그간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해 왔던 역사에 대한 헌사이며, 그 역사의 시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단계에서 상담소와 업무협력기관이라는 새롭게 변화된 관계를 정립하여 변함없이 더 심화되고 확장된 지역사회 법률구조 사업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다짐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상담소 각 지부들의 창립기념행사를 축하하는 글을 쓰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크고 작은 도시들, 사람 사는 곳의 풍경이나 모습은 제 각각인 것처럼 보여도 한 겹만 들추어보면 비슷비슷한 모양새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동서고금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와 가족 간의 얽힘은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시대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들이 달라지고 그러한 각 도시별 특성이 가정문제에 민감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정을 상대로 각 지역사회에서 이제 상담소와 업무협력기관으로 거듭난 전 지부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법률구조 사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담소와의 관계는 물론 각 지부들의 명칭은 달라질 것이나 그 동안 본부와 지부로서 쌓아온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보다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펼치게 될 법률구조사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담소 역시 본·지부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이들 업무협력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이처럼 각 지부들의 이름은 달라지고 상담소와의 관계도 형식은 달라졌지만 지나온 면면한 역사를 바탕으로 서로 손잡고 앞으로도 법률구조 사업을 함께 해 나간다는 사실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법률구조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고 법률구조라는 말이 이 사회에 정착되도록 한 곳이 상담소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법 제정 이전부터 각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법률구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부설치 운동을 펼쳐 온 것도 상담소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시대를 앞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그리 할 수 있도록 지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애초 상담소 설립자이신 이태영 선생님께서 지부를 만드실 때 일 년 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일 년 후 그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선생님과 지부설치에 동참한 분들과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지부설치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상담소와 전 지부들이 각각 독립된 업무협력기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처음 계획대로 제 자리를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이전과 다름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상담소는 물론 업무협력기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상담소와 이들 업무협력기관은 사안별로 깊이 연대하여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살리고 한 차원 높은 법률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상담소와 이들 업무협력기관은 각 지역에서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려 깊고 넓은 그늘이 되고 따뜻한 품이 되어 지역사회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을 안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 윤 정

판사, 서울고등법원

I. 임의후견제도의 취지

우리나라는 2013. 7. 1.부터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종래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본인의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였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이 있고, 종래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보다 좀 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설계되었다.¹⁾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보면,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진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생겨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게 된 결과 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후견인이 본인을 위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하게 되는 기능을 맡는 제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본인

의 의사가 얼마만큼 반영되어 후견업무가 수행되는가가 후견제도의 성패를 가를 만큼, ‘본인의 의사 존중’, ‘자기결정의 존중’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기존의 실무와 논의는 법정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임의후견의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의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미리 임의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²⁾으로서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업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후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사람과 그 사람이 처리할 사무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다

1) 김수정,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가족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2017), 199-200.

2) 법정후견제도는 경우에 따라 본인의 재산관리능력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임의후견제도는 대리권 부여만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후견계약으로는 동의권과 취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는 점에서 법정후견에 비해서 ‘본인의 의사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가치가 더 강조된 제도라고 이해된다.³⁾ 임의후견제도의 특이성은 본인이 아무런 정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여야지만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본인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이 정해졌다고 하여 임의후견인이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의후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하여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필수적이다.⁴⁾ 이 점이 통상의 위임계약이나 대리권 수여 계약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임의후견과 관련한 조항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목차에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임의후견과 관련된 법 조항과 절차의 주요 내용

1. 관련 법 조항과 절차의 개관

민법은 제959조의14 이하 7개 조문을 ‘후견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절로 편제하고 있는데, 임의후견제도는 위 조문들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민법 제949조의14 제1항은 후견계약의 의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피후견인으로 될 사람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

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후견계약은 강학상 보통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장래형 후견계약, 즉효형 후견계약, 이행형(전환형) 후견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⁵⁾

보통 장래형은 본인에게 판단능력 감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유형으로 종래 임의후견계약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는 후견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장래 자신이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로 후견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것을 임의후견인 후보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방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행형(전환형)은 임의후견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권을 부여하되, 장래 판단능력이 감퇴하는 단계에서 임의후견계약으로 이행하는 유형이다.⁶⁾

마지막으로 즉효형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본인과 사이에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형이다. 즉효형은 후견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가 법정후견보다 임의후견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후견계약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직후에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유형은 본인이 현재 정신적 제약 하에 있음을 전제로 체결되는 이상 본인

3) 이러한 점에서 임의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로 개정되게 된 계기가 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김수정,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가족법연구 제31권 제2호(2017), 200].

4) 법정후견의 경우에는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다.

5) 이하 내용은 박태신, “개정민법상의 후견계약에 관한 연구”, 변호사 44집(2013), 153; 김수정,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가족법연구 제31권 제2호(2017), 203-204; 이영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2014), 79-80 참조하였다.

6) 일본의 경우 점차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단계에서 임의후견계약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는 등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 즉효형 후견계약이 이용되는 빈도는 낮은 편이다[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11-12].

의 의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에 자신의 병상의 진행에 대비하여 이 유형의 후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있기 바로 직전에 후견계약,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이 경우에는 법정후견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 유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⁷⁾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공증인법 제25조). 또한,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27조).

○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후견등기를 하도록 한 이유는 후에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훼손, 멸실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의 체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⁸⁾ 후견등기와 관련하여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후견등기법’이라고 약칭한다)’에서 관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후견등기사무는 관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후견등기법 제8조 제1항).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후견등기법 제4조, 제20조 제2항). 등기되어야 하는 사항은 후견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

한 공증인의 성명, 소속, 그 증서의 번호 및 작성 연월일, 후견계약의 본인의 성명 등의 정보, 임의후견인의 성명 등의 정보, 임의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대한 사항 등이다(후견등기법 제26조 제1항). 임의후견 등기는 아직 임의후견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황, 즉 후견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부터 공시가 되는 특징이 있다.

○ 후견계약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시기와 관련하여서이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제959조의15 제1항).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때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위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여 기각되는 사례가 실무상 종종 있다.

7) 이와 같이 후견계약을 공정증서에 의하여서만 체결하도록 한 이유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과 계약 체결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 계약서의 변조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법 제2권(2015), 1421(현소해 집필 부분)]. 이에 대하여는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번거롭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방식 요건을 폐지하거나[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민사법학 제66호(2014), 121-122] 사서증서 인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영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2014), 86]이 있다.

8) 이현곤,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고시계사(2018), 225. 위 글에 따르면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큰 차이점의 하나로 등기 시점을 들고 있다. 즉 법정후견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어야 등기되는 것에 반하여, 임의후견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확정될 때가 아니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미리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절차상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5 전문). 즉 의사의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5 후문).

또한,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959조의15 제2항).

그리고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은 필수적 기관인데, 임의후견인의 가족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고,¹⁰⁾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59조의15 제5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937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확정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계약의 내용과 임의후견인에 관한 사항은 이미 후견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후견이 개시되어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등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 임의후견과 법정후견간의 관계

임의후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후견의 개시 여부와 후견을 받게 되는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법정후견보다 우선하게 된다. 이를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법정후견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제한된다.

위 원칙의 적용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 따른 것인데, 위 조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임의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의 적용은 문언상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할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즉 후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위의 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법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때 후견계약의 등기가 법정후견의 심판청구 전에 반드시 마쳐져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¹¹⁾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정후견 절차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후견계약이 사후에 체결되어 등기가 이

9) 이때 본인 이외의 청구권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민법 제959조15 제1항 참조).

10) 임의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하고 가족을 제외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민사법학 제66호(2014), 122-123.

11) 참고로 위 결정례의 사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그 항고심이 계속되고 있던 중 사건본인이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한 후 바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이다. 사건본인은 이에 항고심 재판부에 법정후견 심판청구 사건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항고심은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위 결정례에 대하여는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정후견을 개시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침해이자,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법정후견을 반대하는 의사가 진정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의사 결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가령, 후견제도에 관한 쉬운 설명을 통한 이해의 촉

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후견 심판청구 이후에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어 등기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²⁹⁾

다음으로는, 위 조문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위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에 따르면,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고 판시하면서 법원이 법정후견을 우선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요청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법정후견의 보충성)’에도 불구하고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요청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임의후견인에게 본인을 학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의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현저한 비행이 있었던 경우, 임의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현저한 직무태만 등으로 해임된 경우,

후견계약 체결 이후 임의후견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후견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피후견인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후견계약 체결 이후 후견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 계약내용만으로는 본인의 보호가 불충분하고 더욱 강력한 형태의 후견이 필요한 경우,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권한이 본인을 충실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¹³⁰⁾

한편, 법정후견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종전의 법정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본문).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단서).

III. 임의후견과 관련한 통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2020. 9.까지의 임의후견과 관련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1.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사건 통계¹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사건 통계

연 도	구 분	접수건수	처 리 건 수				
			계	인용	기각	취하	기타
2013년 (2013. 7. 1. ~ 2013. 12. 31.)		6	1	1	-	-	-
2014년		6	8	1	4	2	1
2015년		4	5	3	-	1	1
2016년		10	7	3	1	2	1
2017년		10	13	5	4	3	1
2018년		10	8	1	3	4	-
2019년		14	10	4	-	6	-
2020년 (2020. 1. 1. ~ 2020. 9. 30.)		7	9	1	2	4	2

2. 후견등기 관련 통계

법정후견과 대비하여 임의후견 등기 건수를 보기 위하여,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통계 모두를 소개한다.

후견등기 관련 통계

기 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임의후견 감독인선임
2013년 (2013. 7. 1. ~ 2013. 12. 31.)	150	32	6	11	1
2014년	995	157	175	13	1
2015년	1,494	159	276	26	4
2016년	2,083	219	99	28	0
2017년	2,862	414	345	52	15
2018년	3,652	776	548	87	4
2019년	4,400	448	669	80	5
2020년 (2020. 1. 1. ~ 2020. 9. 30.)	3,345	334	649	52	2
합 계	18,981	2,539	2,767	349	32

3. 관련 통계의 분석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임의후견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법정후견에 비하여 미미한 비율로 이용되고 있다.

임의후견등기 건수가 2017년 이후로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사건의 접수건수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등기 건수가

거의 없는 것은 즉효형 후견계약보다는 장래형 후견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등기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인용되어야 가능한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사건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위 1.의 통계)를 살펴보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건수 중 상당수가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은 아래 IV.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진) 없이 본인의 의사의 진정성을 부인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평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인환,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 원칙(평석)”,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60집(2019. 9.) 참고.

12) 이영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2014), 91 참조.

13)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2018), 197;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제1호(2018, 3), 537; 박득배, “후견계약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114 참고.

14) 이하 통계는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입수한 통계이다.

15) 취하건수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법원의 보정명령 과정이나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고 취하한 것으로 추측된다.

IV.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기각 결정례 분석¹⁶⁾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사건이 기각되는 이유는 크게 보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 초기에 임의후견제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장래형 후견계약을 체결한 직후, 본인에게 판단능력 불충분이라는 상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구하는 청구가 많았었다. 제도 초기의 청구 기각 결정은 그와 같은 이유로 많이 내려졌다.

둘째, 본인이 후견계약 체결 당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판단능력, 즉 의사능력조차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때이다. 이 경우는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법정후견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사실상 법정후견을 잠탈하기 위하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정후견 개시 심판청구의 심리 진행 중에 비로소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함으로써 심리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¹⁷⁾

넷째, 임의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경우이다. 이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957조의17 제1항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게 된다.

V.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임의후견제도가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먼저 동양의 가족주의적 관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의 부족, 유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정하여 두거나 이를 권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¹⁸⁾ 결국 사회 내 인식의 변화는 임의후견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그 유용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은 정부기관, 유관기관의 홍보 등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의 원인으로 절차의 번잡성과 과도한 비용을 드는 견해도 있다.¹⁹⁾ 다만 그 절차와 공정증서 작성이 요구되는 측면에서의 비용 소요 등은 민법이 후견계약을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을 필수적 기관으로 한 데서 나오는 특징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문제와 절차 이용의 간편성 문제의 조화의 관점에서 임의후견실무의 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²⁰⁾

이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임의후견제도 자체의 홍보

성년후견제도는 그 동안 유관기관의 홍보나 언론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비하여 임의후견제도에 대해서는 그 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제도의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만큼, 임의후견제도의 홍보로 그 중심점을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

16) 사법부 코트넷의 판결문검색시스템 내에서 ‘임의후견’을 사건명 검색어로 지정하여 기각된 사례만 검색·분석한 결과이다.

17) 배인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세창출판사(2018), 109.

18)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2018), 174.

19) 박인환,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대회 자료집(2017), 63, 67-69; 제철웅,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민사법학 제66호(2014. 3.), 120.

우리나라와 가장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제도²¹⁾를 비교하여 보건대, 임의후견제도가 법정후견제도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본의 임의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도 임의후견제도가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다수 이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천천히 그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²²⁾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²³⁾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의 건수의 경우는 2000년도 51건에서 시작하여 2015년도에는 791건에 이르고 있다. 임의후견 등기건수는 2012년도의 경우 9,091건이고, 운영 개시부터 2014년 말까지 누적 등기건수의 총 합계는 6만 7,076건에 이르고 있다.²⁴⁾

위 통계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의 인구 차이, 성년후견의 역사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는 훨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자체 내에서 임의후견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그 이유는 첫째, 임의후견제도 자체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둘째, 신뢰할 만한 임의후견인을 찾기가 어려운 점 등을 꼽고 있다.²⁵⁾

일본 내에서 임의후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를 주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업 내용 중 임의후견의 이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요코하마 생활안심센터나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가 법인임의후견감독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임의후견계약 체결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설치가 필요하고 신뢰할 만한 임의후견수임자의 소개 시스템 구축 및 공적조성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의후견제도 자체의 홍보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홍보, 즉 임의후견절차를 통하여 본인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재산관리사무와 신상보호사무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양자 모두의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일방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임의후견이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의 발굴

임의후견제도 자체가 생소한 제도이다 보니, 어떠한 사안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첫째,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로 활용될 수 있다.²⁸⁾ 고령화

20) 참고로 2016년 독일 연방대법원이 본인의 의사능력이 단순히 의심되는 정도로는 법정후견을 통해서 임의후견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하여, 장기간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에서 그 원인을 찾은 그 분석은 경청할만하다[김수정,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가족법연구 제31권 제2호(2017), 238].

21) 일본의 경우도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고, 임의후견계약의 등기를 경유하여야만 하는 점 등 전반적인 제도의 개요가 유사하다. 다만, 일본은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임의후견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2) 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8.

23) 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8.

24) 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8.

25) 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9.

26) 아래 내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의후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17. 4.), 96-99.

27) 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11 참조.

28) 일본의 경우는 주로 70대나 80대의 고령층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50대 후반이나 60대의 경우에는 최근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위기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 비율이 낮다[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12-13].

사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임의 후견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유언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친족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임의후견이 이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친족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재산관리나 처분을 적절하게 하는지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후견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판단능력 및 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자녀들의 부모를 위한 사후 대책 또는 부모들이 노령화되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²⁹⁾

4.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후견계약서의 복수 마련과 매뉴얼

법정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본인이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무에 관하여 임의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임의후견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놓인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게 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표준후견계약서는 일응의 참고 기준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당사자가 구체적인 조항들을 검토하거나 수정 또는 추가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언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표준후견계약서가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된다면(각 조항마다 선택지를 추가하는 등의 방식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법무부에서 공개하는 후견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notary.moj.go.kr>>를 참조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³⁰⁾에서 공개하고 있는 후견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참고로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문안례는 일본공증인연합회가 공표하고 있는 문안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³¹⁾ 그 유형은 장래형, 이행형(전환형), 즉효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5. 임의후견인 후보군의 발굴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믿을 만한 임의후견인 후보군이 없는 경우라면 임의후견제도를 선뜻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아직 사회 내에서의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 등으로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후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내고, 그러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가 그룹에 대한 신뢰가 수반되어야 임의후견계약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³²⁾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소개 시스템이 공공기관 또는 사회

29) 다만, 임의후견제도는 임의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고, 법률행위 동의권과 취소권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0) 현재형·장래형과 이행(전환)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양식의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편, 성년후견 심판실무(2015), 485-488.

31) 일본공증인연합회편, 『신판 증서의 작성과 문례』, 立花書房(2005), 97-174 참조.

내에서 구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사회 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임의후견 전문가 그룹의 양성을 위한 공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6. 임의후견제도만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 조직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개의 조직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업무 비중은 법정후견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의후견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또 역으로 대부분의 업무 비중이 법정후견에 치우친 탓에 더더욱 임의후견 제도의 홍보나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의 홍보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서는 임의후견제도를 설명하고, 후견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 임의후견인 후보군과의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만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³²⁾

VI. 맺는 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본인에게 정신상 장애가 생겨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법률규정에 따라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이 되었고, 후견인의 권한도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반드시 가까운 친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후견인, 특히 법인후견인이나 전문직 후견인 등이 후견업무를 맡게 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권

한 범위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근래 1인 가구 등이 늘어나고 있고, 친족들과의 교류가 없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갑자기 정신상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던 상황, 즉 그다지 교류가 없었던 친족이나 전문직 후견인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³⁴⁾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후견업무를 맡기고 싶다면,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친족이나 친구 등에게 본인이 미리 검토한 바에 따라 대리권한을 수여하여 본인을 위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향후 임의후견계약은 위와 같은 가족 해체 현상,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특히 무엇보다 제도 자체의 홍보, 임의후견의 장점 등이 홍보되고 임의후견제도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다.

이미 임의후견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이 글을 통하여 임의후견제도가 홍보될 수도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임의후견제도의 취지와 관련 조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조금이나마 임의후견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32) 현재 이와 같이 적절한 임의후견인 후보군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정법원이 알아서 법정후견 시스템 내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으므로, 임의후견이 법정후견보다 매력적이지 아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의후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17. 4.), 188-189].

3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의후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17. 4.), 196-197도 후견계약의 전체 진행을 안내, 지원할 임의후견제도 지원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공적기구나 사적단체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4) 다만, 일본의 경우는 친족이 임의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일면식이 전혀 없는 전문직 후견인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 저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任意後見契約書の解と務, 山本修외 2인 편저, 三協法規出版(2014), 13].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족법개정운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

제3차 · 4차 가족법개정(1978~2002) ㉓

1986년 3월 정부는 '90년까지 민법의 남녀 차별 조항을 폐지 - 인구 억제 시책을 위한 6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실제로 90년까지 남녀평등 실현을 미루고, 차별의 철폐도 여성의 권리회복 차원이 아니라 인구 억제를 위한 부차적 차원에서 보고 있어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는 12대 국회를 향한 총공격을 다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상담소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30년, 새로운 시작'의 한 과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21세기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1986년 5월 15일 여성백인회관 강당에서 열린 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대회에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가정법원의 전국 확대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가족법 개정 연극 제2차 공연을 추진하여 6월 21일~22일 남산 송의 음악당에서 김수남 극본, 연출로 '다 같은 사람인데'를 공연했다.

연합회는 9월 23일 이태영 회장 외 3만 명의 서명용지를 첨부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드디어 의원입법으로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위해 6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다. 1987년은 새해 벽두에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1986년 5월 15일 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대회

과 4.13 호헌 조치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 개헌과 민주화 열기가 분출하였고, 대통령 직선제와 개헌 논의가 구체화 하기에 이르렀다.

12대 마지막 회기인 제137회 가을 정기 국회에서는 여성계 주장이 담긴 두 가지 헌법조문이 통과되었다. 10월 29일 제9차 개헌에서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가족법 개정이 국가의 의무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되었다. 10월 30일에는 ‘혼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성동본 혼인자에 대해 두 번째로 한시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12대 국회에서까지 가족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1988년 연합회는 제13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3일을 기점으로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후보들을 가족법 개정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류하려던 연합회의 의도는 13.1%라는 낮은 설문지 회수율 때문에 무산되고 소수의 찬성자를 부각시키는데 그쳤다.

연합회는 총선 이후 가을에 열릴 제144회 정기국회를 향해 다시 치밀한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하여 가족법개정운동 사상 처음으로 153명의 제안의원을 얻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2월 17일 정기국회가 폐회되어 가족법 개정안은 다시 해를 넘겨 차기 안건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1989년 1월 12일 연합회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2월 28일 드디어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족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그토록 오랜 세월 논쟁거리였던 가족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결국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가족법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가을에 접어들어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연합회의 연내 가족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다.



▲ 1986년 6월 21일 연극 공연 ‘다 같은 사람인데’

이때를 즈음하여 상담소는 창립 33주년 기념사업으로 10월 13일 여성백인회관에서 ‘가족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13대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안 제출에 노력한 제안자 대표로서 김장숙, 박영숙 의원과 학계 대표 배경숙 교수, 변호사회 대표로서 유현석 변호사, 김광일, 홍영기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내 가족법개정심사소위원회의 민주, 평민당 대표로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가족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가족법 개정을 각계에 건의하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10월 2일에 연합회는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25일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와 공동주최로 ‘가족법개정여성대회’를 가졌다.

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10월 30일에 노태우 대통령에게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상담소는 여론 확대사업을 전개했다. 그 중 하나가 상담소 교육원의 시민 공개강좌를 통한 가족법 개정 촉구였다. 이 강좌는 ‘민주화는 가족법 개정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11월 2일에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편집부



▲ 가족법개정을 위한 포스터





상담을 통한 자기반성이 부부관계의 향상으로 이어져

사건번호 2018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8회, 부부집단상담 2회
피해자1(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집단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23회 실시

상담기간

2019. 4. 8. ~ 2019. 11. 1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1과 결혼한 지 2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3남 1녀(27세, 25세, 21세, 21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11월 사건 당일 피해자1이 자신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 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2 막내아들의 배를 4~5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본 사건으로 행위자는 40시간 수감명령과 6개월간 본소예의 상

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행위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번째 사건 발생 시에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고, 이번에도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 접근금지 기간 중에는 집 밖에서 살았고 기간 종결 후 피해자1,2 및 자녀들을 만나 대화하고 집에 들어갔다.

행위자는 본 사건 폭력발생 원인을 처가에 빌려준 금전을 받지 못한 데에 기인한 갈등이라고 하였지만 본인의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절주 및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지 않기, 처가 식구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하지 않기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피해자1의 바람 역시 행위자가 절주하고 자신과 처가 식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절주노력이 계속되었고, 음주를 하더라도 감정 조절을 잘하여 주사를 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언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피해자1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피해자1에 의하면 행위자는 상담기간 중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음주문제가 개선되었으며, 표정 및 언어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상담 종결 시는 9점으로 평가하고, 모자라는 1점을 보충하기 위

하여 자신이 더 양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1은 사건 당시의 부부관계는 5점, 상담 종결 시는 9점으로 평가하고 모자라는 1점의 요인은 자신의 갱년기에 기인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3*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4회, 집단상담 7회 등
총 14회 실시

상담기간

2019. 4. 11. ~ 2019. 10. 3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5세, 3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8년 12월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방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며 거실 벽에 밀치고 가슴을 치는 등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여 6개월간 상담 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퇴직상태였으며 육아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행위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다가 행위자가 이혼이야기를 꺼내면서 폭행을 한 것이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건 지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하였는데 결혼해보니 성격차이 등 문제가 있었지만 부부 모두 결혼생활에 성실하게 임하였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는 가사가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본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재취업을 하였다.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작은 아이는 처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행위자도 육아에 더 신경을 쓰면서 피해자가 가사나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다.

행위자는 상담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하였지만 계획된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부부관계가 특별히 더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지만, 상담을 받으며 결혼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의 부부관계와 현재의 부부관계 모두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하였고, 모자라는 3점은 소통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00% 다 행위자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고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행위자에게 폭력 자체에 대하여는 폭력을 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상담을 받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더 포용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2* 폭행/2018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1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3회, 자조모임 3회
부부상담 2회, 부부집단상담 6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27회 실시

상담기간

2019. 5. 9. ~ 2019. 12. 9.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남 2녀(16

세, 15세, 9세, 5세)가 있다. 2018년 10월 사건 당일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고객에게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욕설을 하는 아내의 얼굴을 향해 지갑 및 두루마리 화장지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서류 및 곰인형을 남편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무시를 갈등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아 우울감이 높고 자존감은 약한 상태였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가 친절로가 며칠씩 지내다 왔고 그 때마다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한마디 하면 아내가 몇 마디를 하여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높았고, 아내가 아이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불만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개선하고 가정을 잘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언어 폭력, 정서 폭력, 기물 파손, 신체 폭력 등 모든 폭력을 중단하기, 대화 시 상대방에게 명령조의 어투를 하지 말고 청유형으로 말하기를 부과하였고, 현재의 갈등요인인 아침식사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였다.

상담기간 중 부부 모두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실제로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아내는 사건 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1~2점, 상담 종결 시는 5점으로 평가하였고, 남편은 사건 당시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 종결 시는 5점으로 평가하였다. 남편은 상담을 통한 자기반성이 부부관계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그동안 아내는 거실에서 남편은 안방에서 생활하고 수면을 취했으나 상담 종결일부터는 아내가 안방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수면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사건번호 2019버5**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3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9. 5. 28. ~ 2019. 11. 2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6세)이 있다. 2019년 2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방정리를 위해 게임을 실행중인 행위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자 행위자는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기 싫은 마음에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서재로 밀치고 먹살을 잡고 흔드는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1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를 진정시킨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피해자는 부부갈등 원인으로 시가와의 갈등, 자라온 가정환경 차이, 결혼기간 중 행위자의 외도(친정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상처도 있음) 등을 꼽았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커지면서 피해자는 언어폭력이 심해졌고,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부부대화법을 배우고 행위자와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실천과제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그동안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고, 혼욕을 명분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폭력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라는 대로 종교생활도 잘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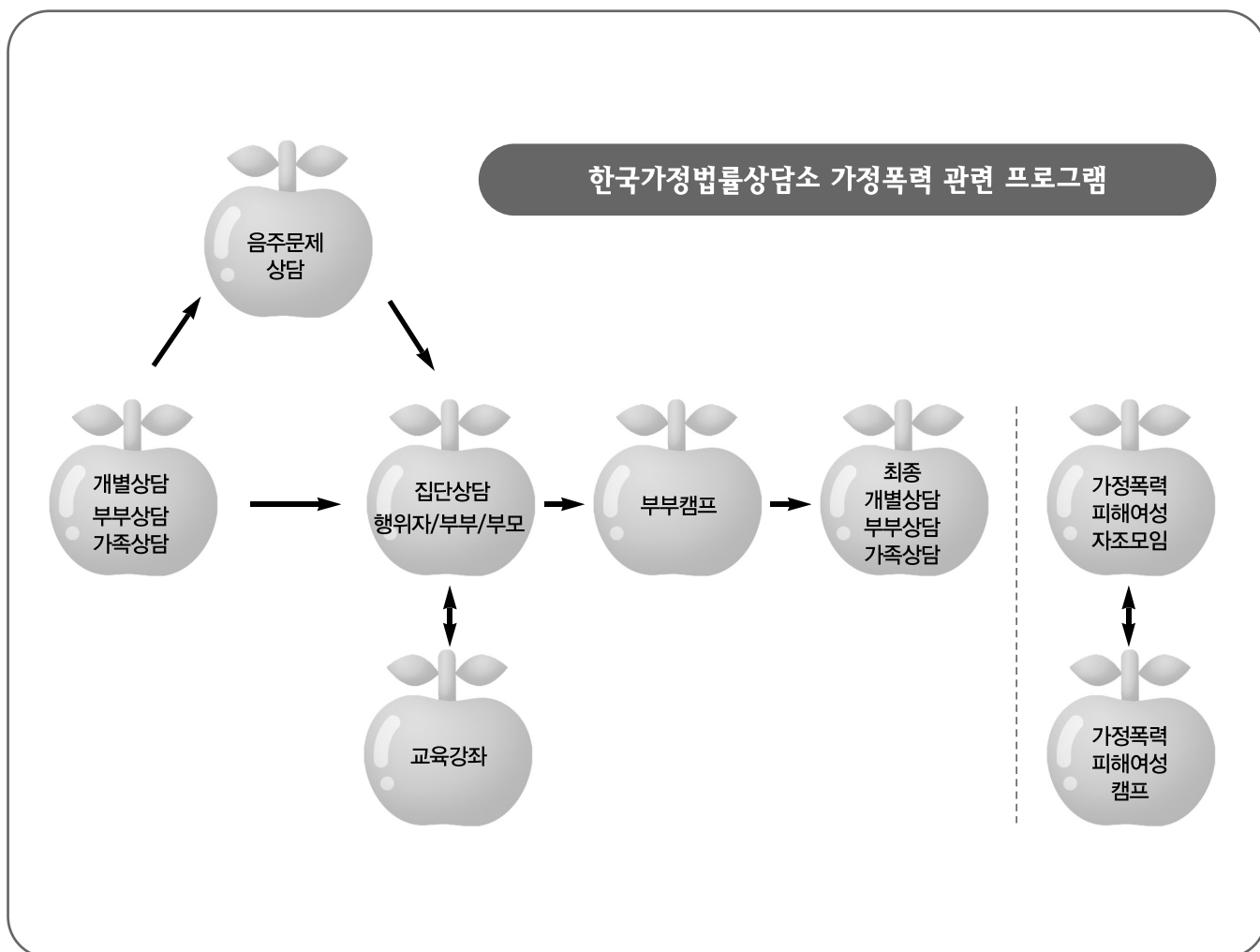
부부는 실천과제를 이행하면서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가정예배를 주 1회 하면서 공격 등 폭력적인 대화를 자제하였다. 중간점검 결과, 부부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 피해자에 의하면 행위자가 이전보다 화를 덜 내고, 피해자도 이전보다 화를 덜 내며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변화에 행위자도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부부 모두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상담에 열의가 있었으며 부부가 함께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임신으로 행위자만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행위자는 이전에 비하여 화가 덜 나는데 기도와 종교생활의 영향도 컸다고 하였다. 피해자도 이전보다 자신의 말을 따라주고 이해해주는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는 자신의 기준을 행위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행위자의 성향을 인정하게 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1점, 상담 종결 시점은 10점 만점이라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는 0점, 종결시점은 8~9점이라고 평가하고 모자라는 1~2점은 과거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행위자가 과거 폭력을 한 경우를 보면 일이 바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였는데 피해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는 행위자가 본격적으로 바빠질 때여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분노조절이 안되거나 폭력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기인하는 불안점수라고 하였다. 행위자로부터 폭력재발은 절대 없으리라는 다짐을 받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혼 인 ②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Q 대학 동기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성동본이란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혼할 때 장애가 될까요?

A 1997년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동성동본금혼규정은 근친혼금지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

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혼인금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09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겠지만 설사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①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한 경우(민법 제815조 제2호), ②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동법 제815조 제3호), ③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동법 제815조 제4호)입니다. 한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815조에 의한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을 제외한 경우로(동법 제816조) 이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17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이미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동법 제820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혼인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Q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혼인신고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는 일정한 양식의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첨부서류는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며, 전국 어디서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서를 첨부합니다(동법 제781조 제1항). 혼인신고서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대해 신고지 처리가 시행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조). 그러나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등록사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36조).

● 혼인신고를 혼인당사자가 함께 하지 못할 경우

Q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가 같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관계로 함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혼인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합의와 함께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이 때 혼인당사자 중 일

방이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²⁾.

● 혼인 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다

Q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는 혼인 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도록 부부간에 협의를 하였다면 혼인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3호).

●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가 현지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Q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 하나요?

-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 혼인신고서, 기본증명서(혼인당사자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혼인당사자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혼인당사자 각1통),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등
- 2) 혼인신고서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 : ① 혼인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② 혼인신고인이 아닌 자가 출석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③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거주하는 곳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인끼리 혼인했을 때 그 곳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민법 제814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36조).

● 국제결혼일 때 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36조 제2항).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미국인은 소속된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법률들에 모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 따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귀하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고, 귀하와 혼인할 미국인이 교부받은 미국의 주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서면(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 외국인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 국제결혼을 한 친구의 아내가 소개하여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혼인신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한국인 남성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기 위한 혼인적령 등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 방식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본국의 유관기관으로부터 혼인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명서와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여권, 호구부(중국인인 경우), 출생증명서, 신분등록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여권 이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번역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혼임을 증명할 서류는 외국인 본국의 관공서나 재외공관(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장소는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혼인당사자인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또는 외국인의 거주지 중 한 곳으로 택하여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항이 기록됩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입니다.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혼인생활을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따라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동법 제90조 제1항).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과 초청인에 대하여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요건을 심사,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2항). 사증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Q 저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면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원국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고 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부여 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고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면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결혼실태조사 등을 마친 후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결정을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귀화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 영혼결혼은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Q 결혼을 앞둔 딸이 약혼자와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간 것이 너무 안타까워 두 집안에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올려 주고 혼인신고도 해 주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A 결혼은 살아 있는 사람들 간의 혼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비록 영혼결혼식을 올려 준다 하더라도

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사 사망한 사람에 대한 혼인신고를 제3자가 하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그 혼인신고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Q 결혼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도 혼인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명백하게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안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혼인신고는 남편과 충분한 합의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

Q 8개월 전에 결혼했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한 지 20일쯤 되었을 때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이때 양가부모님께 연락해서 신혼집에 오셨고, 양 집안 싸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

로 별거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등록부상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는데 혼인무효가 될 수 없는지요?

A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81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Q 종매로 만나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며칠 전에 심한 정신적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완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없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제822조, 제825조). 이 기간 안에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㉑ 20대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하시며, 저와 남동생도 자주 때리십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여러 번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범죄자 만들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답답합니다. 주먹이나 발로 하도 맞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욱하여 아버지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다투는 제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㉒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귀하의 가정처럼 가정폭력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난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는 폭력성향이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싫어하면서 귀하도 폭력적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라셨지요? 욱하면서 다투는다고는 하지만 폭력에 노출되었던 자녀들이 모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 또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내 안의 잠재된 폭력성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 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위탁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장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인 신고로 공권력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귀하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폭력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어머니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소를 방문해주시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사람답게



글 | 그림 | 장차현실



본성은 아니더라도
참는다,
아닌 척 한다.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기에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거기까지이니라



새로 들어온 책 2019.5-2020.10

나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 인문학의 길 공공기관에 날개를 달자 노년학 가족과 통치 다문화 교육과 정책의 이해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폭력의 역사학 내 집에 갇힌 사회 평등은 개별 사회복지, 업의 변화와 마케팅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20년 법전 2020년 소법전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1권1집,2집(상,하)(2019)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2권2집(상,하)(2020) 판례의 무게 친족상속법 윤진수교수 정년 기념 민법논고 주석 민법 상속편 주석 민법 친족편 2018 민사집행법 2018 부동산등기법 2018 민사실무 I, II 2017 새로운 판결서 작성방식 가사소송 서식대전 가사조정 이론과 실제 개인파산, 회생실무 우리 아이 AI 노인교육론 2019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제13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2019 제11회 현진건 문학상 수상작품집 너의 빛나는 그 눈이 말하는 것은 2019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 단순한 진심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III)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I)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I) 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기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김미선 패러다임북 2019 길화성 철학과현실사 2020 김용진 한국능력협회미디어 2020 한경혜 외 신정 2019 조은주 창비 2018 박승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9 홍성욱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0 김향훈 풀리는책 2019 최성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김명수 창비 2020 신혜원, 이은홍 사계절 2019 이원준 집문당 2019 프레데릭 사워 길 2019 이충호 외 법무부 2020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0 현암사법전팀 현암사 2020 김선택 외 푸블리우스 202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0 윤진수 박영사 2020 김주수, 김상용 법문사 2019 윤진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 박영사 2020 민유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민유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8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17 김덕원 진원사 2019 정승원 외 서울가정법원 2020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19 박찬 외 다빈치BOOKS 2020 임구원 지식공동체 2020 강영숙 외 생각정거장 2019 편혜영 외 은행나무 2019 권이향 외 화니콤 2019 공선옥 외 창비 2019 윤성희 외 문학동네 2019 조해진 민음사 2019 마경희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정성미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송효진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주재선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조선주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박복순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김종현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최규환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등
---	---

총 726권

- 출처별 : 민음사 기증도서(일부) 173권, 세종 기증도서 101권, 여성정책연구원 46권, 헌법재판연구원 31권, 사법연수원 8권 및 상담소 자료 38권 등 포함
- 자료분야별 : 사회과학 319권, 문학 126권, 철학 131권, 총류 42권, 역사 28권 등 포함

최정아 사서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전(前) 지부 대상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

지난 10월 23일 본소 강당에서 202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 지부를 대상으로 한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있었다. 전 지부 업무협력기관 대표자 17명과 본소 광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복미영 상담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 날 모임은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진행으로 전 지부 업무협력기관 지원에 대한 안내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이 있었다. 당일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12월 말 경 본소와 각 전국업무협력기관 사이의 업무협약증서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당일 전국업무협력기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아직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관계로 우선 지역명으로 기록하며 지역명의 가나다순임).

구리·남양주 전병화 소장, 군산 조미영 소장, 동해 김혜동 소장, 목포 씬터 조혜리 소장, 부천 가폭 박미애 소장, 성남 이정숙 소장, 가평 정진경 소장, 송도 이영미 소장, 수원 박윤선 소장, 울산 정민자 소장, 익산 김성남 이사, 전주 광영신 소장, 정읍 송경숙 소장, 중구 제오복 소장, 제천 가폭 이정미 소장, 청주 정복자 소장, 평택·안성 석현숙 소장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 실시, 비대면으로 진행

본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광배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오히려 하반기에 일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상담소가 이에 앞장서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어서 박소현 법률구조 제2부장이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내년에 진행예정인 심포지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부모와 성인자녀간 폭력양상'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진 교수(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이서원 소장(마음편한상담소),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며, 정윤경 교수(연세솔루션상담센터)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본소 차연실 상담위원, 박상진 상담위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 촬영

본소에서는 10월 19일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을 주제로 교육용 영상제작을 위한 촬영이 있었다. 영상의 내용은 이혼, 가정폭력, 상속 관련 상담 사례와 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촬영은 광배희 소장의 본 상담소 소개,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그리고 김민선 변호사의 전문가 답변과 사례자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사례자는 전문 연기가가 대신하였다. 이번에 제작되는 교육영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반인 대상 가족법 교육을 폭넓게 확산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사진 2면)

「비혼모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 관련 교육영상 제작 촬영

지난 10월 12일, 13일 상담소와 일산 스튜디오에서 「비혼모 가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 교육을 위한 영

상 제작 촬영이 있었다. 영상의 내용은 비혼모가 출산 후 겪게 되는 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출생신고, 인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담았다.

교육영상은 비혼모(연기자 대역)의 이야기와 전문가(조은경 상담위원)의 상담과 설명 그리고 그래픽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소 직원 재교육의 일환으로 낙태죄 관련 법안 개정 논의 검토

본소에서는 10월 12일 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민선 변호사의 발제 및 손명진 변호사의 의견개진으로 현재 논의 중인 낙태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해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 당시 현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순회상담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다른 부문도 점차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 애란영스빌 출장상담

- 10. 6. 이레상담교육원생 대상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특례법 강의
- 복미영 · 천다라 상담위원
- 10. 7.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전화상담)
- 조은경 상담위원
- 10.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10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10. 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단 10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10. 10. 강원대ATRI 가정폭력상담원양성교육강의
- 박소현 상담위원
- 10. 14. 서대문구 지역복지현장주도학습 - 가족법 및

2020년 10월 상담통계

총상담 5,942					
법률상담 (5,492)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서신
1,043	4,289	150	8	1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00		71		79	
* 인터넷 정보 이용 20,978					

2020년 10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942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492건(92.4%), 화해조정 3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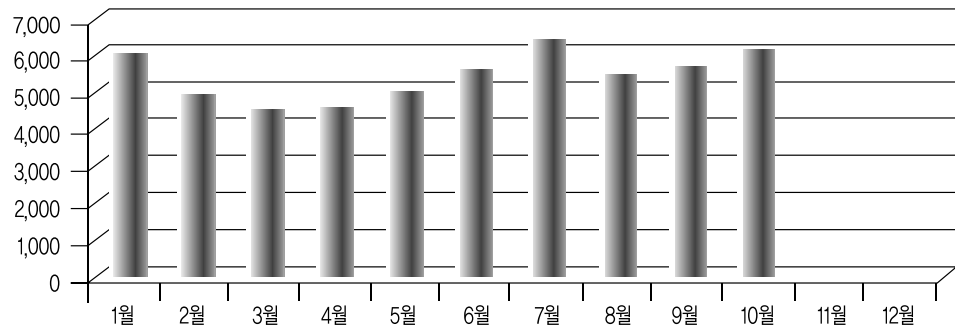
(5.0%), 소장 등 서류작성 71건(1.2%), 소송구조 79건(1.3%)이었다.

법률상담 5,492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9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혼해소(0.8%→1.0%), 친권 · 양육권(5.6%→5.9%), 인지(0.9%→1.0%), 친생자존부(2.0%→2.3%), 파혼(0.2%→0.4%), 혼인무효 · 취소(0.5%→0.8%), 이혼무효 · 취소(0.5%→0.6%), 부양(1.1%→1.9%), 유언 · 상속(5.7%→7.5%), 가족관계등록부(3.1%→4.1%), 친양자

(1.1%→1.4%), 개명(0.6%→1.0%), 성년후견(2.1%→2.9%), 가사기타(8.9%→9.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492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43건(19.0%), 전화상담 4,289건(78.1%), 인터넷상담 150건(2.7%), 순회상담 8건(0.1%), 지상상담 1건(0.0%), 서신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가정폭력관련특례법 강의

- 조은경 상담위원

10. 15. 애란영스빌-비혼모가 알아두어야할 법교육

- 유혜경 상담위원

10. 21.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전화상담)

- 복미영 상담위원

10. 21. 강서지역자활센터 이용자 대상 가족법 및

신용회복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회의에 참석하였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이혼 등 사건에 대한 가사조정 참여하였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 수강생들에 대한 상담참관을 지도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10일에는 강원대학교 부설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센터의 가정폭력관련상담원 양성교육에서 “가정법률의 변화 그리고 가정폭력”을 주제로 비대면 강의를 하였다. 8일과 23일, 29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곽배희 소장,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 격려

곽배희 소장은 지난 10월 19일 상담소에서 준비 중인 「알아두면 힘이 되는 가족법」을 주제로 한 유튜브 교육용 영상을 위한 촬영에 참석하였고, 21일에는 본소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가정폭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격려하였다.

고맙습니다

2020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윤미, 이승주, 천정환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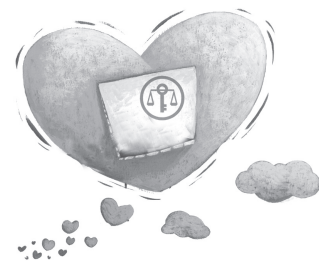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원모, 김경민, 김계현, 김상철, 김소희, 김수연, 박연경, 박준영, 박지윤, 배은진, 성휘연, 윤여영, 이상은, 이용안, 임지윤, 장성윤, 전우인, 정유나, 조주현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지속적인 외도와 폭행을 저지른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335

담당 : 권영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7세)와 피고1(남, 39세)은 2007년 11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9세)을 두고 있다. 피고1은 2009년경 원고의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생과 외도 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퇴사하였다. 이후 2018년 3월경 원고가 피고1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후 2018년 9월경부터 피고1은 상간녀인 피고2의 집에서 현재까지 동거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1은 2017년 9월경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며 추석에 시댁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2019년 5월경, 원고가 피고1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자신의 집을 창고고자 피고1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1은 원고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원고의 목을 잡아 밀어 눕히고 코와 입을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하였다. 현재 원고는 피고1의 폭행을 피하여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고1과 이혼하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2020. 5. 21.)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2020. 5. 22.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1로부터 위 2항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1의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00)에 관하여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을 지정한다.

5. 피고1은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6.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원고와 피고1은 상호 협의 하에 시간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7. 원고와 피고1은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

8.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심각한 폭언, 폭행과 잦은 외박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370

담당 : 안준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42세)는 몽골출생 한국국적 여성이고, 피고(남, 42세)는 몽골국적의 남성으로 둘은 2017년 9월경 혼인하였고 현재 4세의 미성



년 자녀 한 명을 원고 혼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 중 피고로부터 수차례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병원치료를 받았었고, 피고는 잦은 외박 끝에 2019년 7월 16일 가출한 후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원고는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위자료 1천 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자녀 역시 원고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역시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몽골국적의 남성인 탓에 직업이 일정치 않고 소득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몽골로 귀국할 계획이었고, 그럴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원고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유대 없이 성장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하며, 양육비는 월 65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2020년 6월 18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국적 남성과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 받기가 어려운 탓에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이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등의 입법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0. 6.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자는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6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당일면접)

나. 면접교섭 장소 및 방법

–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협조의무

– 피고는 사건본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서로에게 위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안준형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390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1세)은 18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재개발,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로 상권이 축소되어 가게 유지가 힘들었다. 점차 빚이 늘어나 배우자와 금전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급기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2014년경 이혼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고자 대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버텼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장기간

적자로 가게는 폐업하였고 신청인은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매달 70만 원씩 변제하였다.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열심히 일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가던 중 폐암 3기 진단을 받았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암 투병 중으로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다. 이에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9.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후천적 청각장애를 가진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9-473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와 피고(남, 42세)는 3년의 동거 후 2005년 9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여, 10세)을 두었다. 원고는 결혼 직전인 2004년 12월경 돌발성 난청 및 이명으로 후천적 청각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의 가족들은 친정에 연락해 원고를 데리고 가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직 후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고, 자주 외박하거나 원고와 대화를 거부하는 등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각종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자녀 교육비, 식료품비용 등으로 지출하면 빠듯한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지인과 만남 후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비싼 택시를 타고 다닌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 때문에 7천 만 원이라는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사건본인은 두고 원고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원고는 갑작스러운 피고의 변화에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의 무시, 모욕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인천가정법원 2020. 7.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4: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한다. 위 일정을 변경해야 하거나 추가로 면접교섭을 실시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하여 사전에 쌍방 협의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모두 포기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110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70세)은 지인들의 권유로 해양스포츠 사업에 투자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투자한 회사의 회장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후 생활용품 소매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경쟁업체로부터 밀려나 적자를 보게 되었고, 채무가 증대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폐업과 동시에 고령과 건강상 문제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연금수급자로 월 평균 68만 원의 소득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10. 23.)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0-360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43세)과 상대방(여, 34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7세, 여 5세)을 두었으나, 2017년 7월 14일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 조서가 작성되었다. 현재까지 상대방과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은 2017년에 3차례 정도 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에서 추후 신청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바 있었다. 청구인은 예전에 비하여 소득이 많이 줄었고, 상대방은 현재 직장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부산가정법원 2020. 9. 1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0. 1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 원을 사건본인 ◇◇◇의 계좌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에 대한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452

담당 : 김정수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27세)는 채무자(남, 26세)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여, 8세)을 출산한 이후 헤어지게 되었다. 2018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조정조서는 채무자가 사건본인을 임의인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만 원 지급 및 과거 양육비로 1,4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년 7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2020년 7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2021년 7월 31일까지 4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작성되었다. 조정 성립 후 채무자는 사건본인을 인지하였고, 약속된 과거 양육비 한 번과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2020년 두 번째 지급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끔 보내오는 장래 양육비도 금액이 차츰 적어지고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모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0-489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7세)과 피신청인(여, 37세)은 2006년 3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4세, 11세)을 두었으나 2016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75만 원을 2017년 10월부터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1,21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양육

비 지급을 촉구하는 이행청구서를 받고 양육비 지급의사가 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한번 입금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0. 9. 2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2016. 9.자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0. 10. 31.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4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